

의안번호	제 832 호
의 결 연 월 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안지윤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1월 10일

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안지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3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1월 10일

발 의 자 : 안지윤, 최정훈, 김국기,
박재주, 안치영, 오영탁,
조성태,

1. 개정이유

- ‘문화재’를 ‘국가유산’ 체제로 개편하는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»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»,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및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.
- 이에, 국가유산 체제에 발맞춰 관련 조례인 「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」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법령에 따른 제명 변경
 -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
→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
- 인용법령 명칭 변경
 - 「문화재보호법」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(안 제1조 및 제2조)
 -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(안 제7조)

○ 정부기구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

－ “문화재청장” → “국가유산청장”(안 제9조)

○ 법령에 따른 조문 변경

－ “국외소재문화재” →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(안 제1조~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산기본법」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69조”를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9조”로,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국외소재문화재를”을 “국외소재문화유산을”로 한다.

1.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이란 충청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문화재의”를 “문화유산의”로,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국외소재문화재의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의”로, “국외소재문화재 보호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”을 “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”로, “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”을 “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문화재위원”을 “문화유산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

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, “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”로, “문화재로”를 “문화유산으로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)”을 “(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국외소재문화재”를 각각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국외소재문화재 보호”를 “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”로, “문화재청장, 국외소재문화재재단”을 “국가유산청장,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</u>	<u>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재 보호법」 제69조에 따라 충청북 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9조----- 국외소재문 화유산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 며,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 령의 정의에 따른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“국외소재문화재”란 충청북도 에서 국외로 반출된 「문화재 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재 를 말한다.	1. “국외소재문화유산”이란 충청 북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「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9항에 따 른 문화유산을 말한다.
2. “환수”란 국외소재문화재를 구 입, 수증,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한다.	2. ----- 국외소재문화유산을 ----- ----- -----.

제3조(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북도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실태조사단)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(이하 “실태조사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

제3조(책무) -----

----- 문화유산의

----- 국외소재문화유산 -----

-----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
----- 국외소재문화유산의 -----

-----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국외소재문화유산 -----

-----.

제5조(실태조사단) ① -----
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
----- 국외소재문화유산
실태조사단-----
-----.

② -----

원을 시·군 향토사학자, 문화재
위원,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
촉 또는 임명한다.

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
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
행한다.

1. ~ 4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제6조(자료제공) 도지사는 국외소
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
대한 교육·홍보 활동을 수행하
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
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(환수 후 관리) 도지사는 환
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
보호를 위하여 「충청북도 문화
재 보호 조례」에 따라 충청북도
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.

제8조(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
수활동의 지원) ① 도지사는 국
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
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
력해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
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
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
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----- 문화유산위
원-----
-----.

③ ----- 국외소재문화유
산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자료제공) ----- 국외소
재문화유산 -----

-----.

제7조(환수 후 관리) -----
-- 국외소재문화유산 -----
----- 「충청북도 문화
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
례」 ----- 문화유산으
로 -----.

제8조(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
환수활동의 지원) ① ---- 국
외소재문화유산 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국외소재문화
유산 -----

-----.

1. <u>국외소재문화재</u> 보호 및 환수 활동 사업 2. <u>국외소재문화재</u>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·홍보 3. (생략) ③ (생략) 제9조(협조체계 구축) 도지사는 <u>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</u>와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<u>문화재청장, 국외소재문화재재단</u>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	1. <u>국외소재문화유산</u> ----- ----- 2. <u>국외소재문화유산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9조(협조체계 구축) ----- <u>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</u> ---- ----- ----- -- <u>국가유산청장,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</u> ----- -----.
---	--

관련법령 발췌

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

제67조(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)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·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68조(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)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, 보존·관리 실태,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·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, 한국국제교류재단,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9조(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)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·육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·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9조의2(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)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1호

○ 사 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